

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부산광역시장

2020년 3월 25일

부산광역시 훈령 제1506호

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의소집) 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(이하 “감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
③ 임시회의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, 일시·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·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
제3조(의안의 작성 등) ① 회의 의결안건은 「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.

② 부의안의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의안에 따라 소관업무팀장이 하며,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의사업무를 처리하는 팀장(이하 “의사업무담당팀장”이라 한다)에게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의안의 배부) ① 의사업무담당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의안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의안 목록을 작성, 첨부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감사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에게 배부한다. 다만,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의 부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의 및 의결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회의의 진행) ① 회의는 성원보고에 이어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.

② 회의는 안건상정, 제안 설명, 질문과 토론, 의결 또는 심의종결 순으로 진행한다.
③ 제안 설명은 소관업무부서장 또는 소관업무팀장이 하며,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담당자 등 관계자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의안의 심의·의결) ①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7조(상대방 등의 진술)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하게 되는 상대방 등에게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 개최통지서를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제1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록한 서면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
제8조(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·관리 등) ① 회의 심의·의결에 따른 의결서 및 감사위원회 심의·의결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사업무담당팀장이 작성하고, 위원장, 위원, 소관업무팀장이 열람한 후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1. 회의 일시
2. 참석한 위원 명단
3. 상정 안건
4. 발언 요지
5. 의결 내용
6.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

③ 회의록 작성은 속기에 의한 작성 또는 제2항 각 호의 요지작성으로 한다.
④ 제6조제2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때에는 의사업무담당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,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.

제9조(회의의 공개여부)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과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 결정 또는 감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위원장이 처리할 사항)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처리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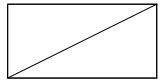
1. 시정·주의(훈계, 경고)요구 중 관계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
 - 가. 변상명령요구에 관한 사항
 - 나. 징계 및 문책 요구에 관한 사항
 2. 개선요구·권고·통보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
 - 가. 신분상·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
 - 나. 시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·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
 - 다.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시책이나 법령·제도 등의 변경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
 3. 재심의·적극행정면책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
 4.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처분이 요구된 사항
 5. 검찰, 경찰 통보사항 중 혐의없음, 죄가 안됨 결정 등으로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징계등의 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 6.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심의·의결한 사항
 7. 상위법령 제·개정, 조직개편, 단순 용어 정비 등으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
-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장의 처리 사항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11조(수당 등의 지급 기준) ① 위촉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한다.
②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등에 대한 기준은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및 「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증인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, 식비, 숙박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



제 차 감사위원회의 부의안

처리부 등재번호 : 제 호 ~ 제 호

소 관 팀 :

사건출처 : 실지감사 · 조사() / 서면감사 · 조사() / 기타()

감사 개요

- 감사명 :
- 감사기간 :
- 대상기관 :
- 감사내용 :

감사결과 처리 - 「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」 제25조(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)

구분	자체처리	처리요구	계
변상명령			
징계(문책)·징계부가금			
시정			
주의(훈계·경고·주의)			
개선			
권고			
통보			
고발·수사요청			
합계			

심의자료 : 붙임

- ## 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[별지 제2호서식]

제 차 감사위원회 부의안 목록

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[별지 제3호서식]

부의 및 의결사항 처리부

-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[별지 제4호서식]

회 의 개 최 통 지 서

문서번호 :				
수 신 :				
사 안 명				
관 계 인	성명(한자)		생년월일	
	소속기관			
	주 소			
관련내용				
근 거	「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			
<p>「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,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서면·전자문서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		
<p>가. 일시 : 년 월 일 오전(오후) 시</p>				
<p>나. 장소 :</p>				
년 월 일				
부 산 광 역 시 감 사 위 원 회				
<p>※ 의견 진술을 위하여 출석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,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경우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	
문의할 곳				

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[별지 제5호서식]

제 차 감사위원회 의결서

1. 일 시 : 20 년 월 일 시 분 부터

20 년 월 일 시 분 까지

2. 장 소 :

3. 출석위원 : 명

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하다.

20 년 월 일

위 원장 (인)

위 원 (인)

제 차 감사위원회 심의 · 의결사항

20 . . .

-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[별지 제6호서식]

회 의 록

회 의 명	
개 최 기 관	
개 최 일 시	
회 의 장 소	
참 석 자	
진 행 순 서	
상 정 안 건	
주 요 내 용	
의 결 사 항	
비 고	

- ## 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[별지 제7호서식]

제 차 감사위원회의 의결서(서면)

건명

다음과 같이 의결하다

20 . . .

위원장 (인)

◇ 제정이유

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회의 소집, 의안의 작성 및 배부, 회의 진행, 의안의 심의·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2조~제6조)
- 나. 상대방 등의 진술,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·관리, 회의의 공개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7조~제9조)
- 다. 위원장의 처리 사항을 정함(제10조)
- 라.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, 증인 및 관계인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1조)